

남원시공고 제2015-1015호

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21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

1. 제정이유

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, 모정,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마을회관 등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
- 리·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, 모정, 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등.

나. 보조금 지원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법령 또는 보조금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.

다. 마을회관 등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9조)

- 보조사업자는 신축,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
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시민소통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 : 우55738,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시민소통실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01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시민소통실(전화 063-620-68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붙임 :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. 끝.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, 모정,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마을회관”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2. “모정”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.
3. “마을공동창고”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4. “마을회”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남원시 리·통·반 설치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리·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, 모정,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.

② 신축은 마을회관, 모정,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

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

2. 재해,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
3. 증축, 개축,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
- ④ 증축, 개축, 보수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기준 등) ①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, 모정,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마을회관의 신축, 재건축은 신청한 마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
1. 가구수 151가구 이상은 건축면적 120제곱미터
2. 가구수 1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
3. 가구수 8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80제곱미터
4. 가구수 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70제곱미터

③ 마을공동창고 신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

1. 농가 50가구 이상은 165제곱미터
2. 농가 50가구 이하는 100제곱미터

제5조(지원순위) 마을회관 등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1.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
2. 재건축
3. 증축·개축·보수공사

제6조(지원방법)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보조금 반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

제8조(마을회관 등의 관리)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,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제한사항) ①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, 교환,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·재건축·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,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남원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